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입니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20922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입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20929 환경부 -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29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입니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20929 고용노동부 - 소규모 고위험 4개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제작

[별첨4] 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중소기업을 위한 구축 가이드

[별첨5]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위한 구축 가이드

[별첨6]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중소기업을 위한 구축 가이드

[별첨7] 육상화물취급업 중소기업을 위한 구축 가이드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하면서 원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되지만,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문제를 가진 발전원입니다. 이에, 원전이 포함되면 그린워싱을 방지한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개정안은 EU와 비슷하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ATF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는 투자자 등이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며, 원전 건설과 운영은 '국가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고 추진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만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9개월만에 바뀐 K-택소노미... '원전포함' 방침에 논란 재점화 (연합뉴스, 9월 20일자 보도)

2.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따로 하자는 한국과는 다른 의견이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핵심사항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공시사항 전반은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통상 3월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뒤 지속가능보고서는 3분기에 발간하고 있어 향후 기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ESG 공시, 사업보고서에 포함' 대부분 동의 (내일신문, 9월 21일자 보도)

3. 오세훈 서울시장의 28일 발표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수소차 전환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우선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영을 제한하고 신규등록도 금지하며, 205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택배용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 경유 공해차량 기준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50년, 서울에서 경유·휘발유 차량 완전 퇴출한다 (헤럴드경제, 9월 28일자 보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